

2005~2009년 국가재정운용계획

- 균형발전 분야 -

- 2005년 3월 28일(월) 13:30~18:00
- 전국은행연합회관 2층 국제회의실

국 가 재 정 운 용 계 획
균형발전 분야 작업반

균형발전 분야 작업반

반 장 기 획 예 산 처 : 균형발전재정심의관

한국개발연구원 : 노기성 선임연구위원

반 원 기 획 예 산 처 : 균형발전재정총괄과장

균형발전1과장

재 정 경 제 부 : 지역경제정책과장

산 업 자 원 부 : 균형발전정책과장

행 정 자 치 부 : 재정정책과장

국 가 균 형 위 : 제도운영과장

국 토 연 구 원 : 권영섭 연구위원

산 업 연 구 원 : 김선배 연구위원

조 세 연 구 원 : 김현아 연구위원

연 세 대 학 교 : 배득중 교수

지방행정연구원: 이창균 연구위원

목 차

제1장 2005~2009 국가균형발전분야 재정운용방향	1
I. 그동안의 재정투자분석	1
1. 지역간 불균형 및 수도권 집중 현황	1
2. 지방재정지원	2
3. 재정투자에 대한 성과평가	5
II. 정책방향 및 재정투자 방향	9
1. 대내외 여건변화 및 국가균형발전의 패러다임의 전환	9
2. 국가균형발전 정책방향	10
3. 국가균형발전 미래상	11
III. 부문별·사업별 투자계획	13
1. 지방재정지원	13
2.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	14
3. 지자체 재정운용의 책임성 제고	18

<<쟁점토론 자료>>

제2장 국가균형발전과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	20
1. 국가균형발전의 필요성 및 정책 방향	20
2.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사업	22
3.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재정사업의 지역간 균형강화	27
제3장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지자체별 자원배분 방안	28
1. 균특회계의 성격	28
2. 균특회계 자원배분의 기본 틀	30
3. 지역개발계정 신청한도(ceiling) 배분	32
4. 2006년도 신청한도 試算	35

제1장 2005~2009 국가균형발전분야 재정운용방향

I. 그동안의 재정투자분석

1. 지역간 불균형 및 수도권 집중 현황

- 과거 개발연대의 중앙집권형 일극 중심의 발전전략으로 인구와 산업체의 수도권 집중 심화
 - 2003년 현재 수도권에 중앙행정기관 83.9%, 공기업 본사 84.8%, 100대기업 본사 92.0%가 집중되어 있는 실정
 - 이러한 지역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 그 동안 정부는 다양한 정책을 추진해 왔으나, 수도권 집중억제의 소극적 접근에 그쳐 수도권 과밀화, 지방과소화 추세가 지속

<표 1> 주요 경제지표로 본 수도권 집중도(2003)

(단위: %)

구 분	중앙 행정기관	공기업 본사	100대 기업본사	제조 업체	벤처 기업	금융 대출	기업부설 연구소	20대주요 명문대
수도권	83.9	84.8	92.0	56.7	77.0	66.0	72.0	65.0
지 방	16.1	15.2	8.0	43.3	23.0	34.0	28.0	35.0

- 수도권의 과도한 집중은 국가경쟁력 저하 초래
 - 수도권의 높은 지가, 주택가격, 혼잡비용 등 외부 비경제효과는 사회적 비용을 추가로 발생시키며 생산성 하락 유발

* 수도권 물류비용(조원) : ('90) 12.4 → ('95) 48.1 → ('02) 66.7

* 교통혼잡비용(조원) : ('91) 1.4 → ('95) 3.1 → ('02) 4.7

- 글로벌 100대 기업의 동아시아 지역본부수가 홍콩 22개, 싱가포르 12개, 베이징 5개나 서울은 단 1개만 소재

2. 지방재정지원

가. 지방재정지원 추이

- 지방교부세율 인상, 국고보조금의 확대 등 정부의 지속적인 지방재정력 확충노력 결과 '05년 예산 기준 중앙정부 일반회계 규모는 4.2배 증가한 반면 지자체 지원규모는 4.9배 증가
 - 내국세의 일정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방에 이전하는 교부세는 내국세 규모의 증가와 교부세율 인상으로 5.5배 증가
 - 지방양여금은 '05년부터 사업성격에 따라 균특회계, 교부세, 보조금 사업으로 재편
 - 국가가 특정목적 사업 수행을 위해 지자체에 지원하는 국고보조금(균특 보조금 포함)은 같은 기간 중 7.8배 증가

<표 2> 지방재정지원 추이

(단위: 조원)

구 분	'91(A)	'05(B)	B/A
<지방이전재원 ¹⁾ >	11.8	58.7	4.9배
· 지방교부세	7.8	43.2	5.5배
· 지방양여금	2.0	-	
· 국고보조금	2.0	15.5 ²⁾	7.8배
<일반회계>	31.4	134.3	4.2배

1) 교육자치단체 이전재원 포함, 2) 일반보조금 11.1조원, 균특보조금 4.4조원

□ 지방재정 수입구조

- 2003년 지자체 세입(약 97조원) 중 중앙정부로부터의 이전재정 수입(34조원)이 지방세수입(30조원)보다 더 큼.

<표 3> 지방재정 수입구조

(단위: 억원)

	1980	1990	2003
지방세수입	7,678	63,786	306,167(31.4%)
세외수입	10,874	115,802	326,075(33.4%)
이전재정	7,490	49,553	343,014(35.2%)
계 (지방재정수입)	26,042	229,141	975,256(100%)

주: 각 연도 세입(일반회계+특별회계) '90까지는 결산액, '03년도는 최종액 기준(순계).
지방채는 세외수입에 포함.

□ 국세에 대비한 지방재정지원은 증대 추세를 유지

- 국세에 대한 재정지원의 비율이 1975년의 25% 수준에서 최근의 40~50% 수준으로 다소의 기복은 있었으나 꾸준히 증대

□ 교육이전재정을 제외한 경우에는 재정지원의 국세에 대한 비율이 1970년대의 10~15% 수준에서, 최근의 30% 수준까지 증대

□ 수도권과 비수도권간의 지방재정배분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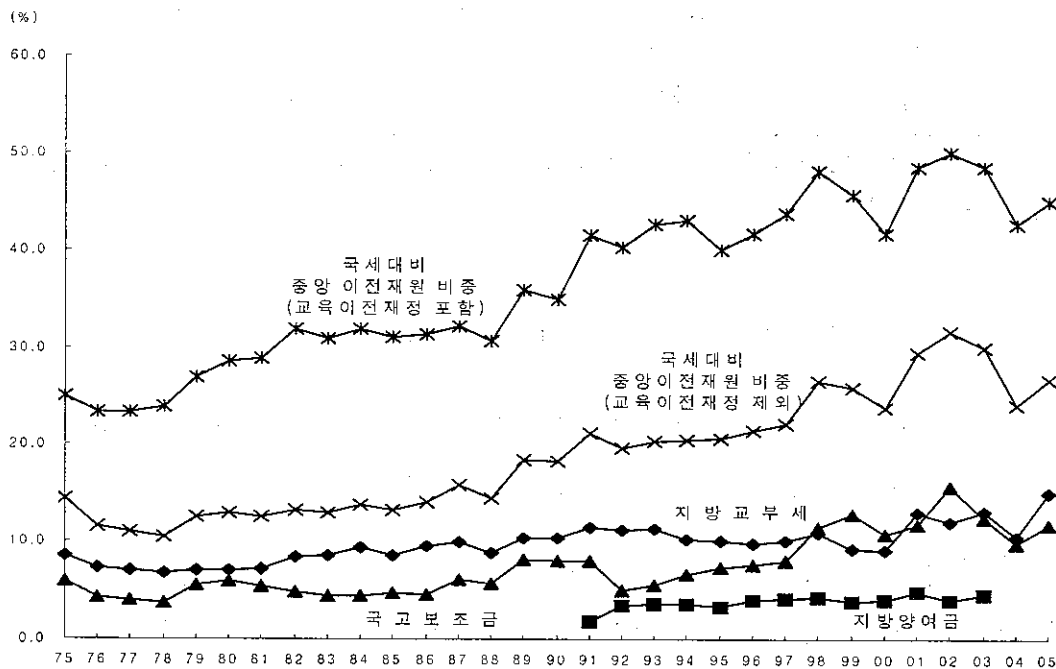
- 2004년 지방재정지원의 수도권 : 비수도권 비율 17 : 83
- 총예산의 수도권 : 비수도권 비율은 41 : 59

<표 4> 수도권과 비수도권간 재정배분

	2001 (수도권 : 비수도권)	2004 (수도권 : 비수도권)
지자체 자체세입	53 : 47	55 : 45
중앙정부의 지방재정지원	18 : 82	17 : 83
지방재정지원 후의 총예산	40 : 60	41 : 59

※ 교육자치단체에 대한 지원 불포함. 지자체에 대한 국고보조금 포함.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순계 기준
자료: 행정자치부

<그림 1> 지방재정지원의 국세비중 추이



나.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

□ 균특회계 2005년 예산은 5.5조원 규모 출범

⇒ ('04) 50,144¹억원 → ('05) 54,930억원 (9.5% 증)

○ 지역개발계정 : 4.2조원

- 낙후지역 개발, 농산어촌 개발, 그린벨트 관련 사업 등

○ 지역혁신계정 : 1.3조원

- 지역혁신체계 구축, 지역전략산업 육성, 지역인력·R&D 개발 등

<표 5> 국가균형발전 특별회계 세출

(단위: 억원, %)

	2004	2005
지역개발계정	39,922 (79.6)	42,058 (76.6)
· 자율편성	33,291	33,322
· 낙후지역개발 등	6,631	8,736
지역혁신계정	10,222 (20.4)	12,872 (23.4)
· 지역전략산업	4,398	6,525
· 인력·R&D 등	5,824	6,347
총 계	50,144	54,930

3. 재정투자에 대한 성과평가

□ 지방재정에 대한 중앙정부의 지속적인 지원확대로 지방재정규모는 큰 폭으로 증가

○ 2005년 기준 총조세 수입의 국세와 지방세 비율이 79:21인 반면 중앙정부와 지자체가용재원(지방세+지방이전재원)의 비율은 44:56로 지자체 가용재원 규모가 상대적으로 더 크게 나타남.

1) 2004년 5조원은 여타 회계에 흠어져 있던 균특회계사업 예산

<표 6> 중앙과 지방간 재정배분

(단위: 조원)

구 분	'85	'00	'05
< 총조세 >	13.6	113.5	164.6
○ 국세(A) ¹⁾	11.9	92.9	130.6
○ 지방세(B)	1.7	20.6	34.0
< 가용재원 >	13.6	113.5	164.6
○ 중앙정부(a)	8.3	57.1	71.9
○ 지자체(b)	5.3	56.4	92.7
▪ 세입기준(A:B)배분비율	88:12	82:18	79:21
▪ 세출기준(a:b)배분비율	61:39	50:50	44:56

주: 1) 국세 ⇒ 일반회계 + 특별회계

- 이는 국가형태에 따라 차이가 있으나, 단일국가 중에서 높은 수준(지방교육이전재원 포함)

<표 7> 주요국의 지방 가용재원 비중 (2004)

(단위: %)

구 분	단 일 국 가				연 방 국 가	
	일본	영국	프랑스	한국	독일	미국
▪ 국세 : 지방세 세입 비중	59 : 41	95 : 5	82 : 18	80 : 20	51 : 49	59 : 41
▪ 중앙 : 지방 총조세사용액 비중	37 : 63	71 : 29	69 : 31	43 : 57	29 : 71	32 : 68

※ 지방 총조세사용액 비중 = (지방세+이전재원)/(국세+지방세)

※ 한국의 경우, 지방교육 이전재원 포함

□ 지방재정의 자율성 확대

- 지자체의 재정자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지방교부세율을 인상
 - 교부세율 인상 : 13.27%('83) → 15%('00) → 19.13%('05)
- 지자체 재정운용의 자율성을 제약하는 국고보조사업 일괄정비('05)

- 총 163개 국고보조사업(1.1.조원) 지방이양

국고보조사업 (533개, 12.7조원)	⇒	지방이양 (163개, 1.1조원)	균특사업 (126개, 3.6조원)	보조사업 존치 (233개, 7.9조원)
--------------------------	---	-----------------------	-----------------------	--------------------------

* 이양사업 : 일반행정 147개 9,581억원, 교육분야 16개 1,900억원

* 이양재원은 분권교부세(내국세 0.83%) 신설 및 담배 소비세 재원 활용

○ 지방양여금은 폐지하고 사업 성격에 따라 재편 ('05)

- 지방의 일반재원(교부세) 확충 및 지역이 사업선택권이 부여된
균특회계 신설로 지방재정의 자율 확대

현행			개편		
			('04 예산, 억원)		
양여금 (43,972)	일반재정보전 (명칭:「지역개발」)	7,562	→	교부세	26,696
	도로정비	19,134			
	농어촌지역개발	3,554	→	국가균형발전 특별회계	3,857
	청소년육성	303			
	수질오염방지	13,419	→	보조금	13,419

□ 재정운용의 투명성 제고 및 균특회계를 통한 낙후지역·지역혁신발
전 중점 지원

○ 특별교부세 축소 : 교부세 총액의 9.1% → 4% (재해, 지역현안
각 2%)

○ 「균특회계」 신설 (5.5조원) 및 지자체 자율편성 실시(3.3조원)

- 균특회계를 통해 낙후지역 및 특화발전 중점 지원

▪ 낙후지역개발 : 4,313 → 6,937억원 (60% 증)

- 지역산업진흥(4+9개 지역 등) : 3,865 → 6,525억원
- 지방 우수 인적자원 개발 : 4,180 → 4,736억원
- 지역개발 및 혁신발전 지원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 신설
 - 신활력지역지원사업 : 2,000억원 ('05년 신규)
 - 산업단지혁신클러스터 구축 : 300억원
 - 지역혁신산업기반 구축 : 300억원
 - 대덕R&D특구 육성 : 100억원

II. 정책방향 및 재정투자 방향

1. 대내외 여건변화 및 국가균형발전의 패러다임의 전환

<대내외 여건변화>

- ☐ 세계화의 급진전에 따른 국가와 지방간 역할 재정립
 - 국제무대의 활동 주체로 지방의 역할 증대
 - 수도권 집중은 교통혼잡, 환경오염 등 막대한 사회적 비용을 유발하여 국가경쟁력 약화 초래
- ☐ 전통적인 요소투입형 발전전략에서 필수적인 공간적 집적과 입지의 중요성은 약화
 - 자본과 노동의 이동이 자유로운 무한경쟁의 장 속에서 고정불변의 한정된 국토의 효율적인 활용이 국가경쟁력으로 직결
 - 인터넷 보급 확산, 교통·통신기술의 혁신은 중앙 중심의 일극체제 국토공간을 다극체제로 재편하는 계기 마련
 - 삶의 질에 대한 관심의 고조로 첨단 지식집약형 산업, 레저산업, 관광, 전원생활 등 지방의 새로운 개발수요 증대
- ☐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새로운 형태의 중앙·지방 간 파트너십 구축을 위해 「지방분권로드맵」이 제시되는 등 지방분권 가속화

<표 8> 지방분권로드맵상 주요 추진과제

추진과제
• 중앙·지방간 기능 재조정 • 국세·지방세 조정 및 지방 자주재원 확충 • 지방재정운용의 자율성·투명성 제고

<국가균형발전 패러다임의 전환>

- 첫째, 공급자(중앙) 주도의 고도성장 전략에서 수요자(지자체)주도의 성장 전략으로 전환
 - 지방은 지역발전방향과 정책수단, 추진전략 등을 스스로 결정 추진하고 중앙정부는 이를 적극 지원하는 방식으로 역할전환
- 둘째, 수도권 일극 발전전략에서 지방의 다극 발전전략으로의 전환
 - 수도권은 동북아 중심에 자리 잡은 지리적 이점을 최대한 살려 동북아 물류 중심지로 성장관리
 - 지방은 전략산업 중심의 클러스터 형성을 통해 지역산업의 특성화
- 셋째, 국가와 지방간 수직적 기능 재배분 및 자주재원 확충
 - 중앙정부의 기능은 지자체가 수행할 수 없는 영역에 국한
 - 지자체의 확대된 기능 수행을 위한 자주재원의 확충

2. 국가균형발전 정책방향

- 자율과 책임을 바탕으로 한 재정분권 추진
 - 자치경찰제 도입, 특별행정기관 정비 등 중앙과 지방간 기능 재편과 이에 따른 관련 재원 이양 추진

- 중앙·지방간 기능 재정비에 따른 보조사업의 지방이양 등 지속 추진

□ 자립형 지방화 추진

- 전국이 골고루 잘사는 국토를 건설하기 위하여 개발과정에서 소외된 낙후지역의 기초생활 인프라 및 소득창출기반 구축
- 지역이 보유하고 있는 혁신역량을 결집하여 지역 특성에 맞는 발전전략을 추진
 - 지역 내 혁신주체들이 유기적으로 협력하여 기술, 인력, 자본을 효과적으로 결집할 수 있도록 지역혁신체계(RIS) 구축 지원
 - 지방 R&D 지원확대 및 新산학협력체계 구축으로 지역혁신의 핵심요소인 기술·인력개발 촉진

3. 국가균형발전 미래상

□ 국가균형발전 비전: 역동적·통합적 균형을 통하여 전국이 골고루 잘 사는 한국 실현

- 행정도시 건설, 기업도시건설, 경제자유구역, 연구개발 특구, 공공기관 및 기업 지방이전, 산업단지 혁신 클러스터화, 지역특화발전 특구 등의 추진을 통해 지방 대도시의 중추기능 강화
- 권역의 중심도시를 전문화된 혁신의 허브로 육성하여 자립형 지방화의 전초기지로 삼고 권역간의 균형 달성함으로써 통합적 균형 실현

□ 5년 후 미래상: 수도권과 지방간의 격차 축소

- 고속철도개통, 인터넷의 보급 및 확산, 삶의 질에 대한 관심 고

조로 지방에서의 지식기반제조업 뿐 아니라 지식기반서비스업
증대에 따른 격차 해소

- 전국이 반나절 생활권에 진입함에 따라 국민들의 업무 및 여가활동 공간 확대
- 고속철도 정차도시와 주변지역의 역량강화로 공공기관 및 기업이 이전되고, 지방대도시 경쟁력이 강화됨으로써 수도권과 지방간 산업발전 격차 축소
- 지방에서 고급일자리가 창출되고 수도권과 지방간 중추기능의 격차가 축소
 - 경제자유구역, 연구개발특구, 산업단지 혁신 클러스터화, 공공기관 지방이전, 지역특화발전 특구 등의 추진을 통해 지방대도시의 중추기능 강화와 지방중소도시의 전문화 촉진
 - 정부부처, 공기업, 정부산하기관 본사, 100대기업 본사, 20대 명문대학 등으로 볼 때 70% 이상 집중된 서울의 중추기능 집중율의 저하 및 지방 대도시의 전문화 제고
- 지방에서 인프라가 확충되고 소득창출기반이 마련되며, 삶의 질 향상
 - 지방문화산업 기반조성, 취약한 지역 관광자원개발, 신활력지역 사업들의 추진으로 지역의 생산 및 소득기반이 형성되고, 삶의 질이 향상

Ⅲ. 부문별 · 사업별 투자계획

1. 지방재정지원

□ 중앙과 지방의 기능 재배분에 따른 지방재정 확충

- 중앙 · 지방간 기능 재조정에 따른 교부세율 인상 ('04) 18.3% → ('05) 19.13%

- 지방재정지원: ('05) 59.8 → ('08) 77조원, 연평균 9.1% 증가

□ 지방 재정 운용의 자율성 증대

- 사용목적 · 용도가 특정된 국고보조금 비율은 점차 낮추고, 지방이 자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교부세 등 일반재원 비중 확대
- 지방재정 지원규모 중 교부세 비율(B/A): ('04) 60 → ('08) 77%
- 지방재정 지원규모 중 보조금 비율(C/A): ('04) 24 → ('08) 14%

<표 9> 연도별 지방재정지원 규모

(단위: 조원)

구 분	2004	2005	2006	2007	2008	연평균 증가율
계(A)	54.2	59.8	64.0	68.9	76.8	9.1
○ 지방이전재원	54.2	54.3	58.1	62.5	70.0	9.2
▪ 교부세(B)	32.8	43.2	47.3	51.5	58.9	15.8
▪ 양여금	8.6	-	-	-	-	-
▪ 보조금 ¹⁾ (C)	12.8	11.1	10.8	11.0	11.1	8.1
○ 균특회계	(5.0*)	5.5	5.9	6.4	6.9	8.2

주: 1) 국고보조금 정비방안에 따라 지방이양(1.1조원), 균특회계 이관(3.6조원), 국고보조금 준치(8.1조원)로 재정비, 증가율은 보조금 준치분으로 산정

2) 균특회계는 2005년 신설, 2004년은 균특회계로 이관되는 사업의 2004예산으로 증가율 산정
자료: 2006~2008년은 「2004~2008 국가재정운용계획」

2.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

1) 균형발전특별회계 운용 기본방향

- ☐ 지방의 재정분권을 확대하고 경쟁과 혁신을 통해 활력있는 지역발전을 유도하는 한편, 낙후지역에 대한 지원을 강화
 - 지역개발사업계정은 시·도별 예산 신청한도를 제시하고 지자체 선호에 따라 사업을 선택하도록 지원체계 개편
 - 낙후지역 지원사업(접경지역, 오지, 도서 등)은 해당 시·군의 투자 우선순위에 따라 추진토록 시·군단위로 자원 배분
 - 지역 스스로 수립한 『지역혁신발전계획』 추진을 체계적으로 지원하여 계획과 예산간의 연계 강화(Plan-oriented)
- ☐ 계획기간 중 균특회계 운용규모는 지속적으로 확대하여 지역불균형을 해소하고 지역 경쟁력을 제고
 - 특히 혁신계정 증가율을 높게 유지하여 지역전략산업과 지방대학 육성을 통한 지역의 혁신역량 배양에 중점
- ☐ 「지역발전투자협약」제도 도입으로 중앙·지방간 파트너십 강화를 통한 지역사업의 안정적 추진
 - 중앙부처의 장과 시·도지사가 다년도 지역사업의 공동추진을 위하여 성과목표, 총사업비, 사업추진방식 등에 관하여 협약체결
 - 지방은 안정적으로 사업비를 확보, 국가는 중·장기 시각에서 성과중심으로 예산 운용

<표 10> 국가균형발전 특별회계 투자계획

(단위: 억원)

세 출	2004	2005	2006	2007	2008	연평균 증가율
○지역개발계정(A)	39,922	42,058	45,345	49,550	52,160	6.9
○지역혁신계정(B)	10,222	12,872	13,664	14,566	16,687	13.0
균특회계 세출총계(A+B)	50,144	54,930	59,009	64,116	68,847	8.2

자료: 2006~2008년은 「2004~2008 국가재정운용계획」

2) 지역개발계정

☐ 지방의 자율성은 최대한 확대

- 지자체 자율편성재원을 지속 확대하여 지자체가 스스로 지역발전사업을 발굴하고 기획하여 추진하는 시스템 정착

☐ 지자체의 자율적인 사업구조조정을 통한 재원의 효율적 활용 도모

- 팽창 일변도식 재정운용행태에서 벗어나 자자체별로 부여된 한도액 범위 내에서 자율적인 사업구조조정 유도

☐ 지역주민의 안전확보 및 재해예방관련사업은 우선적으로 지원

- 재해위험지구정비, 수해상습지개선, 하도준설 등

☐ 낙후지역 지원사업

- 지역의 자립적 발전이 가능하도록 지역혁신역량을 강화, 생동감 넘치는 활력지역으로 변모시킴으로써 국가균형발전 실현
- 중장기적으로 유사한 낙후지역개발사업의 통폐합을 추진하여 낙후지역 개발의 효율성 제고

□ 문화·관광자원 개발

- BTL방식을 활용하여 사업추진 방식 및 재원을 다양화하고 복합 시설 건립을 통해 투자 효율성 및 대국민 서비스질을 제고

3) 지역혁신계정

□ 경쟁력있는 지역산업을 육성하여 자립형 지방화를 이룩하고 지역을 경제성장의 중심축으로 전환하기 위해 지역별 특성화 발전전략을 추진

- 이를 위하여 '4+9개 지역산업진흥사업'을 통해 전략산업 분야의 기술인프라 구축, 연구개발, 마케팅 등을 통합적으로 지원

구 분	사업기간	총사업비(억원)
· 4개 지역 2단계	'04~'08	12,036(2,540)
· 9개 지역 지역산업진흥	'02~'07	11,067(3,605)
* () 안은 융자금액		

- 중장기 목표에 따른 단위사업 운영 및 종합적 평가체계 구축 등으로 지역혁신역량을 강화해 나가며, 지역기술지도(RTRM)에 따른 체계적 기술개발을 추진
- 산업단지혁신클러스터 구축, 지역혁신산업기반구축 등 신규사업 추진체계 조기 구축

구 분	사업기간	'05 예산(억원)
· 산업단지혁신클러스터	'05~'08	300
· 지역혁신산업기반구축	'05~	300

- 지역혁신 핵심주체인 지방대학, 기업, 연구소, 지자체간 유기적인 협력과 네트워킹 체계 구축
 - 지역별로 특성 있는 발전전략과 성공사례 도출을 위한 지역혁신 특성화사업을 시도별 2~3개씩 선정·지원
 - 7개 산업단지를 시범 혁신클러스터로 지정하여, 산·학·연·관 협력적 네트워크 구축, 연구개발역량 강화, 국내외 우수클러스터와 교류·협력 등 지원.
 - 게임, 애니메이션 등 문화컨텐츠 개발을 위한 문화산업클러스터, S/W 개발을 위한 소프트타운 등 정보통신 클러스터 및 농업 연구기능과 생산기능을 결합한 농업클러스터 조성을 추진
- 전문대학 다양화·특성화사업을 통해 경쟁력 있는 분야를 중심으로 영역별 특성화를 촉진
 - 교육여건 확충, 산업체와의 협력을 위한 주문식 교육 지원
 - 지방 R&D 투자를 확대하고 지역특화분야의 과학기술을 지자체 주도로 개발토록 지원
 - 지역 연구개발클러스터 구축, 지자체 연구소 및 지방과학연구단지 육성, 지방연구중심대학 등 지역과학기술혁신사업 추진
 - NURI사업추진으로 112개 지방대학 인력양성사업단에 연구시설, 인력 등 지원
-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수도권 기업의 지방이전에 대한 지원을 대폭 확충
 - 입지보조금, 투자보조금, 고용 및 교육훈련보조금을 지원
 - 기업이전 종합지원센터를 설치하여 입지상담, 행정절차 대행 등 기업이전을 행정적으로 지원

- 이전희망 기업에 대한 실태조사 등을 통해 기업의 애로사항을 적극 발굴·해소
- 기업의 지방투자 활성화를 위한 지원을 단계적으로 확대

3. 지자체 재정운용의 책임성 제고

☐ 자율성 확대에 상응하는 책임성 강화

- 자치단체 재정운영평가시스템 구축
 - 2005년부터 단순 재정분석 방식에서 평가방식으로 전환, 평가 결과 공개 및 우수 자치단체에 대한 교부세 등 과감한 인센티브 부여
- 지방재정 공시제도 추진
 - 자치단체장은 매년 1회 이상 재정평가 결과, 재정서비스 목표와 이행정도 등을 주민에게 공시(2005년 시범실시, '06년 전면 실시)
 - 재정공시 이행실태를 평가하여 재정인센티브 부여
- 지방재정 통합수지 분석제도 시행
 - 지역경제 영향력 분석, 국제간 비교 등을 위한 재정수지 분석('05)
 - 분석결과는 지방재정공시제도 등을 활용, 공개

☐ 제도 개선 및 시스템 구축

- 성과관리 강화를 위한 프로그램 예산제도 도입
 - 지방예산의 구조를 투입중심의 품목별 예산제도에서 성과관리가 가능한 프로그램 예산제도로 개편('08년 전면도입)

- 유형별(도시형·농업형 등) 성과지표 개발 보급, 시범실시
- 자치단체 복식부기 회계제도 확산
 - 결산재무제표를 산출, 의회 보고와 대국민 공시(2007년 전면시행)
- 표준지방재정정보시스템 개발
 - 지방재정 관련 정보시스템을 연계·통합, 종합정보시스템 개발
(예산 + 회계 + 복식부기 정보시스템 → 표준지방재정정보시스템)
 - 자치단체 확산·보급(2006년)을 통해 지방재정운영의 효율성 증대

□ 균특회계 성과평가

- 균특회계를 지방의 자율성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운용하면서 이에 상응하는 책임성 강화 방안 필요
 - 균특회계 사업에 대한 예산집행실적 및 세출구조조정실적 등을 중심으로 평가를 실시하고 평가결과에 따른 인센티브 지원 방안 추진

제2장 국가균형발전과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

국토연구원 박 재 길

이 자료는 국가재정운용계획 공개토론회 발제용으로 개인의견을 바탕으로 작성한 것이며 정부의 공식입장과는 무관합니다.

1. 국가균형발전의 필요성 및 정책 방향

□ 불균형 발전전략의 한계

- 우리나라는 국가주도의 불균형 발전모델로 개발연대기에 고도경제성장을 구현해 옴
- 단기간 내 고도경제성장은 이룩하였으나, 수도권 집중에 따른 사회적 비용의 증대와 지역격차 심화에 따른 갈등으로 국가경쟁력이 저하됨으로써 국가발전이 한계에 도달
- 세계화·지방화가 동시에 진행되는 Glocalization 시대에 국민통합과 국가 재도약을 위한 새로운 국가발전 패러다임이 필요

□ 수도권 집중의 문제점

- 수도권 인구집중도는 1970년 이래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2004년 48.0%에 이르며 2023년부터 50%를 상회할 것으로 전망

수도권 인구집중도 변화

	1970	1980	1990	2000	2004	2023
집중도(%)	28.3	35.5	42.8	46.3	48.0	50.1

- 제조업체의 수도권 집중도는 50%를 훨씬 상회('02년 56.4%)하며, 공기업 본사의 83.2%, 중앙행정기관의 83.6%, 100대기업 본사의 91%가 위치
- 수도권 집중 억제에 위한 각종 규제에 외국기업이 국내 투자를 기피하는 현상 초래
- 수도권 과밀로 교통 혼잡 등의 사회적 비용이 급증하고, 주택보급률 또한 낮은 수준에 머무르며, 환경오염이 심화됨에 따라 환경개선비용도 증대

□ 새로운 국가발전전략의 필요성

- 국가경쟁력 제고와 전국 어디서나 고루 잘사는 나라로 되기 위해서는,
 - 수도권 과밀로 인한 사회적 비용 증가, 중앙집권으로 인한 지방경제 자립기반 약화, 각종 규제에 의해 기업하기 어려운 환경 초래를 해소함이 필요
- 동북아경제중심, 정부혁신지방분권, 국가균형발전,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의 4대 전략을 통해 다핵 국토공간구조의 실현, 수도권과 지방의 동반 발전, 새로운 성장동력 창출이 요구됨
- 분산·분권·분업의 패러다임으로 전환
 - 충청권에 행정중심도시를 건설하여 정부의 주요 기능을 이전하고, 정부투자기관 등 180~200개의 공공기관을 지방으로 분산이전
 - 중앙정부를 혁신하면서 자립형 지방화를 실현하기 위하여 선진국 수준으로 지방분권을 추진

- 규제개혁의 수도권정책과 지역별 특성화발전 전략으로 수도권과 지방의 역할분담을 통해 상생발전을 추진

※ 공공기관을 기능별로 분류하여 지역의 특성과 연계하여 배치하며, 우수인력의 지방정주여건을 확보하여 지역의 구심점이 되는 혁신도시를 건설

2.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사업

1) 건설추진 경위 및 일정

□ 추진경위

- 신행정수도건설특별조치법을 제정·공포(04.1.16) 하였으나 특별법 위헌 판결(04.10.21)로 무산
- 2005년 6개 부처(통일·외교통상·법무·국방·행정자치·여성가족부)를 제외한 12부 4처 2청 이전의 「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도시건설 특별법」을 제정·공포(05. 3.18)하여 행정중심복합도시의 개발을 추진

□ 추진일정

추진단계	주요 사업
준비단계 (~'05)	특별법 제정, 추진체계 정비, 예정지역 및 주변지역 지정, 사업시행자 지정, 이전계획 수립
계획단계 (~'07)	기본계획·개발계획수립, 실시계획수립, 용지매입착수, 건설청 및 특별회계 설치
건설단계 (~'11)	부지조성공사 착공, 청사 건축 착수 행정도시지위 등에 관한 법률 제정
이전단계 (~'12)	행정기관의 단계적 이전 및 주민 입주 개시

2)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의 대강

☐ 도시성격

- 12부 4처 2청의 국가행정기능과 기타 자족기능을 유치하여 국가 균형발전을 선도하는 「친환경도시」, 「인간존중도시」, 「문화·정보 도시」를 건설

☐ 도시규모·개발방향

- 인구규모는 30~50만명, 면적 20~25백만평 내외의 신도시로 2030년까지 단계적으로 개발
- 쾌적한 생활환경을 위해 주거지는 중·저밀도로 조성하고, 녹지도 기존 신도시보다 높은 수준으로 확보
- 전국 주요도시에서 2시간 이내에 접근할 수 있도록 광역교통망을 구축하고, 보행자와 대중교통위주의 도시내 교통체계를 형성
- 첨단 정보통신기술을 이용한 디지털 도시를 구현함과 동시에 상하수도, 폐기물처리 등 공급처리시설을 친환경적으로 조성

3)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의 사회적 효과

☐ '서울 제일주의'라는 편향된 가치관을 크게 완화

- 종래 서울 및 수도권이 독점하던 정보생산, 정책결정 기능 등을 지역에서 분담
- 수도권과 지방이라는 이분법적 사고로부터 협력과 보완구조로 전환
- 지방에서도 개인의 능력에 따라 일자리를 구할 수 있고 문화활동을 즐길 수 있어 '서울지향'을 해소

□ 수도권은 경제수도로 발전

- 수도권의 계획적 관리를 통해서 질적인 개편이 이루어져 금융·물류부문 등의 경쟁력이 향상
- 수도권 독점 및 과밀에서 벗어나 지역간 건전한 경쟁을 통해 첨단 비즈니스 중심도시 및 동북아 경제허브로 발전하는 계기를 마련

□ 지역격차 완화로 지역간 갈등 해소

- 행정중심도시 건설을 계기로 고용, 교육 등 다양한 분야에 걸쳐 수도권과 지방간의 격차를 대폭 완화
- 지방도 국가발전을 전인하는 주체로서 재인식하게 되고 자기 고장에 대한 자긍심을 제고
- 지역자립의 기반과 국가균형발전을 촉진하여 새로운 도약과 상생의 계기로 발전

4) 건설비용추정

□ 도시건설

-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비용은 아직 확정되지 않은 상태이나 이 전기관 축소 등으로 인해 신행정수도 건설비용 추정치(45.6조원) 보다는 줄어들 전망
- 정부청사 등 공공건축물의 건축, 광역교통시설의 건설 등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국고소요는 특별법에 국가예산지출의 상한이 명시됨에 따라 8.5조원 범위내에서 추진될 전망
 - 국가예산지출 상한제가 도입됨에 따라 사업추진과정에서 국고소요가 증가되는 것을 막을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

- 또한, 2030년까지 장기간에 걸쳐 추진됨에 따라 투자소요가 분산되고, 정부투자가 집중될 것으로 예상되는 '10~'12년 기간중에도 재정소요는 연평균 0.9조원 수준

※ 0.9조원은 '05 총재정규모(208조원)의 0.4%수준으로 재정운영에 큰 부담이 되지는 않을 전망

- 행정도시 관련 국고소요는 국가재정운용계획(5개년)에 매년 연동하여 관리함으로써 차질없이 지원할 필요
- 정부의 재정부담을 최대한 줄이기 위해 정부청사 매각대금을 활용하고, 교통시설 등 SOC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를 유치하는 방안을 적극 추진할 필요
- 민간은 주택, 상업, 업무시설 등 건축비 및 도시기반조성비용을 중심으로 투자
 - 토지 취득후 사업시행자는 개발계획에 근거하여 도시용지를 조성후 정부·민간에 택지 등을 공급하여 투자비용을 회수

□ 기존 SOC 투자계획 조정

-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과 관련하여 기존의 SOC 투자계획을 조정할 필요
 - 청주국제공항은 행정도시 및 충청권, 중·단거리(일본, 중국, 동남아지역) 국제선 운행 위주의 지방공항으로 육성
 - 인천국제공항을 행정중심복합도시의 주 국제공항으로 활용하기 위해 행정도시와 인천국제공항간의 통행시간을 획기적으로 단축할 수 있는 교통체계 구축
- 상대적으로 접근하기 어려워지는 강원권과의 연결성 제고를 위해 도로, 철도 노선을 신설하거나 기 계획된 노선을 조기에 건설

5) 재원조달 및 재정지원방안

□ 특별회계 설치로 재원조달

-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에는 안정적으로 재원을 조달하며 지출부문에서 재정운용의 신축성을 유지하고, 다양한 재원조달 방식을 통합할 수 있도록 하는 측면에서 특별회계가 필요
- 특별회계의 세입
 - 이전계획에 따라 이전하는 중앙행정기관등의 청사·부대시설 및 그 부지(중앙행정기관등의 청사의 건설을 위하여 확보한 부지가 있는 때에는 그 부지를 포함한다)의 매각대금
 - 일반회계 및 다른 특별회계로부터의 전입금 등
- 특별회계의 세출
 - 행정중심복합도시에 입지할 중앙행정기관등의 청사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공공시설의 부지매입·건축 및 이전 등에 필요한 비용의 지출
 - 광역기반시설설치지원에의 지출 등

□ 특별회계의 재원조달

- 일반회계로부터 전입
 - 중기재정계획(MTEF: Midium-term Expenditure Framework)의 국가재정운용계획에 반영
- 공공청사 매각대금 및 임대청사 전세보증금 수입
 - 기본적으로 행정도시로 이전 후 공공청사를 어떠한 용도로 활용할 것인가 및 해당 지역의 토지이용규제에 따라서도 매각가치가 상당히 달라지므로 별도 연구가 필요

- 정부청사 매각 대금을 '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특별회계'에 귀속시키고, 장기차입을 통하여 건설비를 조달하고 사후적으로 매각이 완료된 시점에 차입금을 반환하는 방안 검토

☐ 주요 계획 및 대책수립에 필요한 예산 소요에 대응

- 사업준비 및 각종 계획 수립
 - 행정기관 이전계획 수립, 기본계획 및 개발계획 수립, 환경성검토 및 문화재 조사, 사전환경성검토 조사 등
 - 이전기관 공무원 복지대책 수립, 정부청사 배치계획 수립, 청사이전에 따른 행정효율성 확보방안 마련 등
- 체계적 관리대책의 수립
 - 행정중심복합도시 주변의 난개발 및 투기방지 대책, 광역도시계획 수립, 이전후 수도권내 정부청사처분계획 등

3.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재정사업의 지역간 균형강화

☐ 필요성

-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은 국토불균형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참여정부가 국정과제로 추진하는 사업
- 이를 계기로 지역개발사업의 균형발전효과를 높이는 측면에서 재정투자사업에 대해 지역간 균형배치를 고려하여 추진하도록 균형발전영향평가제도를 도입하는 방안 검토

☐ 균형발전영향평가의 지역간 비교기준 검토

- 수도권과 비수도권간, 5~6개의 경제권역간, 16개 광역 시·도간, 또는 기초지자체 수준의 균형발전 중 어느 것으로 할 것인지 결정

제3장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지자체별 재원배분 방안

조세연구원 김 정훈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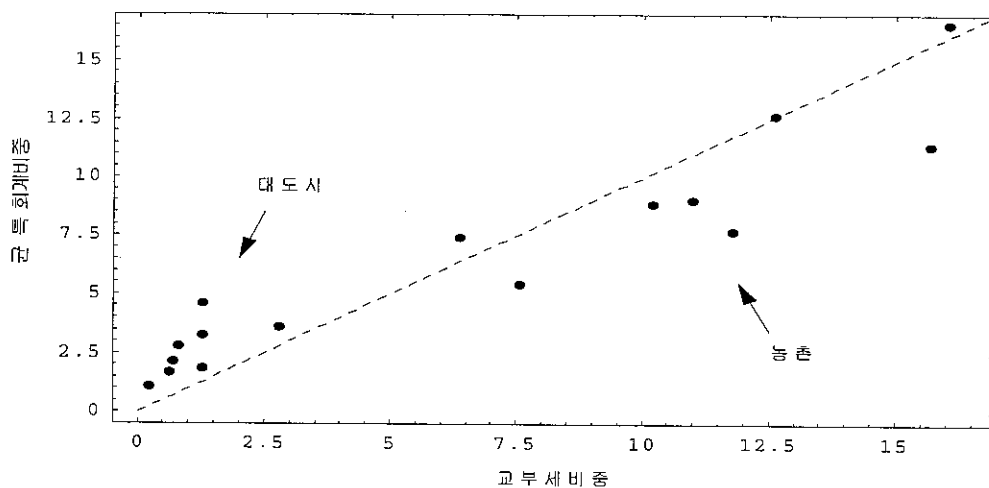
이 자료는 국가재정운용계획 공개토론회 발제용으로 작성된 것으로 정부의 공식의견은 아닙니다.

1. 균특회계의 성격

□ 교부세 · 국고보조금과의 비교

- 교부세와 비교할 때 대도시에 상대적으로 더 많이 배정
 - 순수 교정적 성격인 교부세와 사업적 성격이 반영된 균특회계의 차이점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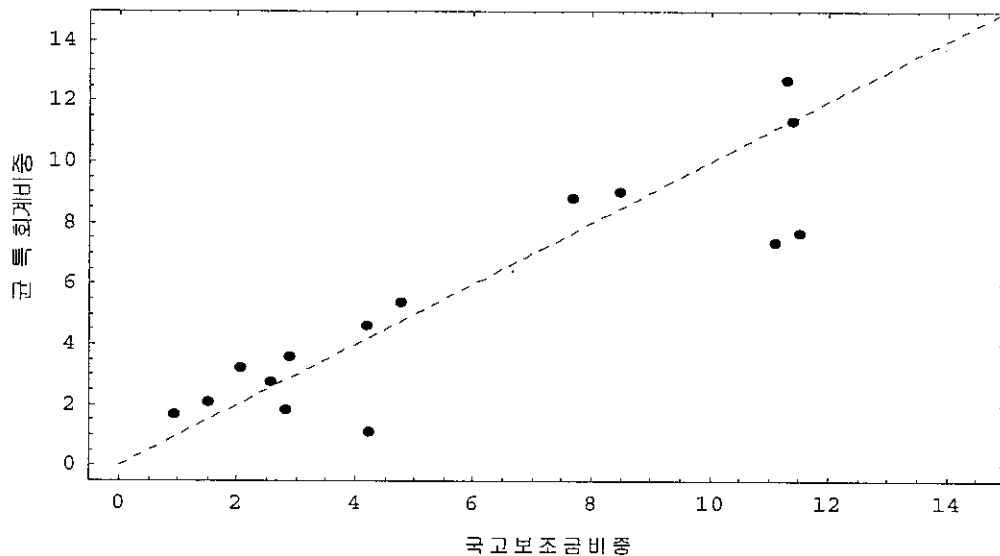
균특회계와 지방교부세 비교



* 교부세 비중: 광역지자체 교부세(과거 7년 누적)의 배분액 비중
균특회계 비중: 2005년 균특총액의 배분액 비중

- 국고보조금과 비교할 때 비중이 거의 비슷하지만, 일부 지자체의 경우 균특회계의 비중이 낮음.
 - 이러한 지자체의 경우 단순화·포괄화된 배분방식 적용시 배분액 증가

균특회계와 국고보조금 비교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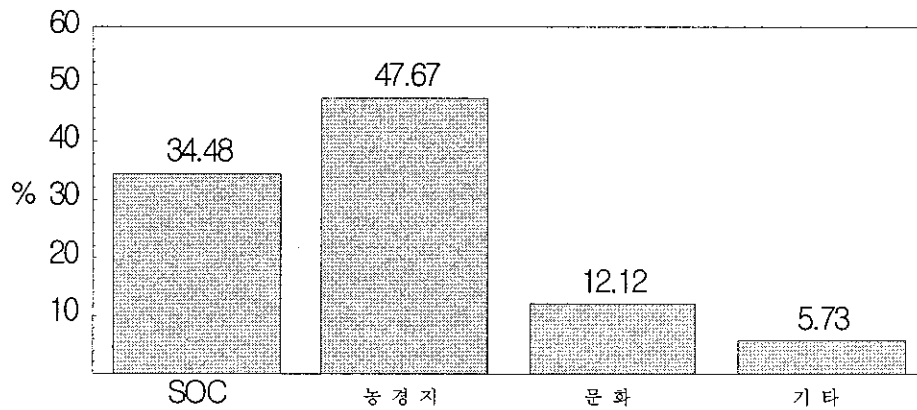
* 국고보조금 비중: 광역지자체 보조금(과거 7년 누적)의 배분액 비중

- 국고보조금 균특사업(일부사업)만을 보고, 지자체에 대한 이전재원 분포의 적정성을 평가하는 데에 한계
 - 회귀모형에 의한 균특회계 배분은 기존 배분을 크게 교정하는 것이 아니라 배분방식의 단순화·포괄화에 초점
 - 단위사업별 지원액 결정이 사업수요를 보다 정확하게 측정할 수도 있으나, 재정운영의 유연성과 창의성 결여

□ 균특회계의 사업별 분류

- 지역개발계정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사업은 농경지 관련 사업이고, 다음으로 큰 비중은 SOC 관련 사업
 - 회귀모형에서 농경지 및 SOC관련 변수의 중요성 시사

신청한도 사업의 사업별 구성비



- 신청한도 사업들은 크게 SOC, 농경지관련 사업들로 구성되어 있으나 이질성이 다소 큰 사업들도 존재
 - 재해관련, 종합개발 사업 등은 국가 사업의 성격이 크므로 일반적인 지자체 자율편성 대상사업과의 차별성 필요

2. 균특회계 재원배분의 기본 틀

□ 균특회계의 취지

- 균특회계는 균형발전계획의 추진을 재정적으로 지원하고 지역개발·혁신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재원
 - 불균형 시정을 위한 교정적 성격과 지역사업 지원을 위한 보조사업적 성격을 동시에 보유

균특회계와 지방교부세 비교

	균특회계	지방교부세
용 도	· 지역개발·혁신 사업 지원	· 용도지정 없이 행정경비 지원
성 격	· 사업 보조 + 교정(균형)재원	· 교정 재원(지역간 조정)
배 분	· 자치단체별로 지역개발계정	· 자치단체별 재정부족액* 기준
기 준	신청한도(ceiling) 배분	* 기준재정수요-기준재정수입

□ 균특회계 재원배분의 기본방향

- 균특회계를 3가지 요소로 나누어 재원 배분
 - 사업적 요소 : 지역발전을 위한 개발소요
 - 균형(교정)적 요소 : 공정 경쟁을 위해 채급이 낮은 낙후지역 등에 대한 별도 지원 소요
 - 경쟁적 요소 : 효율/능력 base의 혁신사업 지원 소요
- ※ 열성적으로 기획하고 노력하는 지자체에 지원
- 지역개발계정은 사업소요 및 균형 소요를 지원하고, 지역혁신계정은 경쟁 소요 지원

□ 2006년도 균특회계 재원배분 방식

- 지역개발계정은 지역별 신청한도내 사업과 한도외 사업으로 구분하여 재원배분
 - 신청한도내 사업 : 광역단체 또는 기초단체에 배분
 - 지역개발계정 중 낙후지역·재해관련사업을 제외한 신청한도 대상사업은 공식모델을 개발하여 시·도별로 배분
 - 낙후지역 지원사업 등을 균형요소 사업 재원으로 확보하여 기초단체 별로 차등 지원
 - 한도외 사업 : GB관리·재해 관련사업은 국가 직접편성
- 지역혁신계정은 공모 등 경쟁적 방법을 통해 중앙부처 중심으로 재원배분

균특회계 자원배분 기본틀

	지역개발계정			지역혁신계정
	신청한도 배분		한도외 사업	
	광역별 배분	기초별 배분		
목 적	▪ 지역 투자사업	▪ 낙후지역 개발	▪ 국가정책 목적	▪ 지역혁신 발전
배분단위	▪ 광역단체	▪ 기초단체		▪ 부처별 지출한도
배분방식	▪ 모델공식 적용	▪ 내역편성	▪ 개별편성	▪ 개별편성
성 격	사업요소	균형요소	사업요소	경쟁요소

3. 지역개발계정 신청한도(ceiling) 배분

□ 주요변수 선정을 통해 배분기준의 단순화·객관화하되, 지역 및 사업의 특수성을 감안할 수 있는 보완장치 필요

○ 균특회계의 지역개발계정이 포괄보조금적 성격을 지니고 있으므로 의미있는 배분기준을 단순화·객관화

▪ 재정력지수, 면적 등 객관적인 통계지표를 사용하여 균특회계의 배분액을 우선적으로 설명

○ 단순화·객관화 작업과 함께 보정재원 등 '제도변경에 따른 보완장치' 마련 필요

< 주요 고려 사항 >

- ① 배분공식의 주요 설명변수 선정
- ② 과거 실적치의 반영률
- ③ 재해관련 사업 등 특정사업의 제외 여부
- ④ 제도변경에 따른 보정재원의 활용 여부 및 규모
- ⑤ 광역·기초 자치단체간 자원배분 기준

① 설명변수의 선택

- 균특회계 배분 공식의 주요 변수로는 ① 지역개발사업의 수요와 ② 낙후도(지자체 재정력 등) 두 가지 요소로 구성

- 지역개발사업 수요를 나타내는 변수로 인구와 면적 고려
- 낙후도를 나타내는 변수로는 재정력지수, 주민세소득세할, 낙후 지역 면적, 노령인구비율 등을 고려

※ 인구, 면적 및 지방세수입 등 세 변수는 우리나라의 이전재원(지방교부세, 지방양여금, 국고보조금)의 지역간 분포의 93%를 설명할 정도로 설명력이 강한 변수

② 과거 실적치 반영

- 과거 실적치와 2005년도 신청한도 간에 높은 상관관계가 존재하므로 과거실적치를 설명변수로 선정하는 것은 곤란

- 그 대안으로 공식기준과 실적치 기준을 가중 평균하여 신청한도를 설명하는 통합 모형 개발

- 신청한도의 50%는 과거 실적치(사실상 2005년의 배분공식)를 반영하고, 나머지 50%에 대하여 새로운 회귀모형을 적용

③ 신청한도(ceiling) 대상사업

- 사업이 이질적일 경우 공식모델로 지역간 배분액을 결정하는 것이 객관적이지 못할 가능성이 있으므로

- 신청한도 내의 사업은 누출효과(spill-over effect)나 국가적 중요도 측면에서 동질적인 사업으로 구성되는 것이 바람직

☐ 그러나 실제 국고보조사업 정비과정에서 2005년도 균특회계 신청한 도 대상사업에는 다소 이질적인 사업도 포함.

○ 균특회계 사업 중 이질성이 강하거나 국가사업적 성격이 강한 일부 사업들은 적용 대상에서 제외

▪ GB 관리 등 국가직접수행사업 외에 방조제, 수해상습지, 재해위험지구정비 등 일부 재해 관련 사업도 제외 검토

[4] 보정재원(safety valve) -- 제도변경에 대한 보완장치

☐ 제도적 변경으로 인한 충격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별도의 충격 완화장치 마련 필요

☐ 영국 등 선진국은 제도변경에 따른 사업의 연속성을 보장하고 단순 배분공식이 가지는 결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별도의 보정재원을 확보하여 운용

○ 다만, 자의적인 자원배분이 될 수 있다는 지방의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 보정재원의 배분 기준 객관화 필요

☐ 균특회계 지역개발계정 총액의 일부(2~3%)를 보정재원으로 설정하는 방안 검토

○ 포괄보조금의 배분공식에서 반영되기 어려운 일부 계속사업(例: 민자 접속도로 사업) 지원

[5] 광역·기초 자치단체 간 배분

☐ 균특회계 신청한도의 배분단위는 기본적으로 광역자치단체를 기준

○ 기초단체에 대한 안정적인 자원배분을 위하여 각 광역단체가 해당 기초단체에 신청한도를 배분할 때에도 개별 배분모형을 개발하는 것이 바람직

- 중앙정부는 2006년도 예산편성시부터 배분공식을 적용하고, 각 광역단체는 현실적으로 2007년도 예산편성시부터 기초단체별 배분모형을 개발·적용
 - 다만, 2006년의 경우에도 광역단체의 자체재원과 기초단체에 대한 배분액 간 비율을 사전 공표하는 등 각 광역단체가 해당 기초단체에 대한 자원배분 기준을 명확화

4. 2006년도 신청한도 試算

□ 기본 전제

- 균특회계 신청한도(ceiling) 예산 증가율 : 5% 가정
- 지자체별 증감률 : 2005년도 배분액의 $\pm 5\%$ 수준

□ 대 안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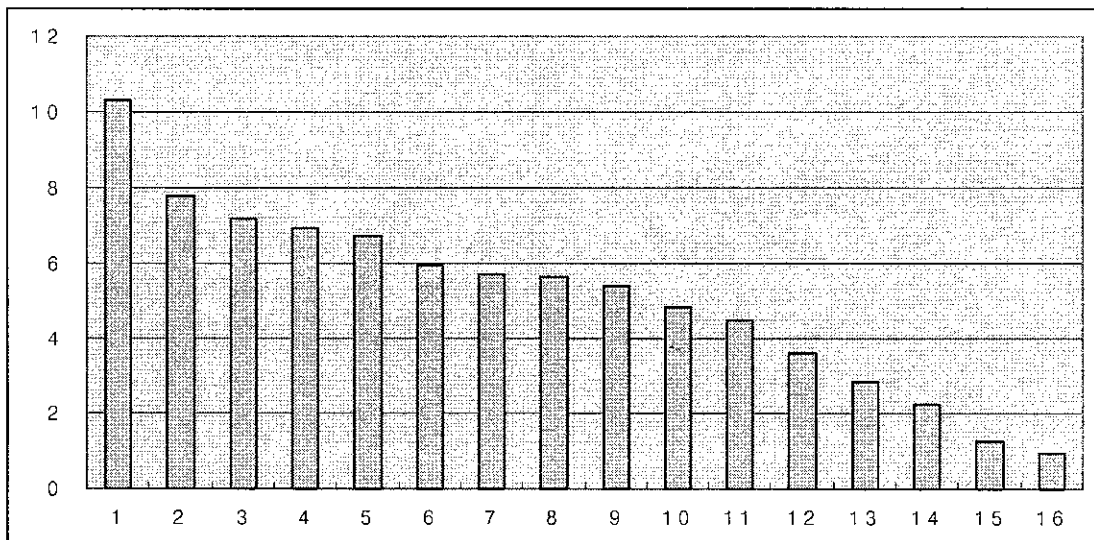
- **대안 1** : 일부 사업을 제외한 신청한도를 대상으로 하고, 기본변수(인구, 면적, 소득세할주민세) 및 노령인구비율을 설명변수로 사용
 - 분석대상 : 신청한도 (낙후지역, 재해대책 사업 등 제외)
 - 설명변수 : 인구, 면적, 주민세소득세할, 노령인구비율
- **대안 2** : 일부 사업을 제외한 신청한도를 대상으로 하고, 기본변수(인구, 면적, 소득세할주민세), 재정력지수, 농경지·낙후지역면적, 노령인구비율을 설명변수로 사용
 - 분석대상 : 신청한도 (낙후지역, 재해대책 사업 등 제외)
 - 설명변수 : 재정력지수, 인구, 면적·농경지면적·낙후지역면적, 주민세소득세할, 노령인구비율

- **대안 1-A** : 대안 1의 설명변수에 재정력지수 변수 추가
 - 분석대상 : 신청한도 (낙후지역, 재해대책 사업 등 제외)
 - 설명변수 : 재정력지수, 인구, 면적, 주민세소득세할, 노령인구비율

□ 제 1 안 : $R^2 = 0.866$

$$\begin{aligned} \text{Log}[y] = & 3.84 + 1.12 \times \text{Log}[\text{인구}] - 0.77 \times \text{Log}[\text{주민세소득세할}] \\ & 0.28 \times \text{Log}[\text{면적}] + 9.86 \times \text{노령인구비율} \end{aligned}$$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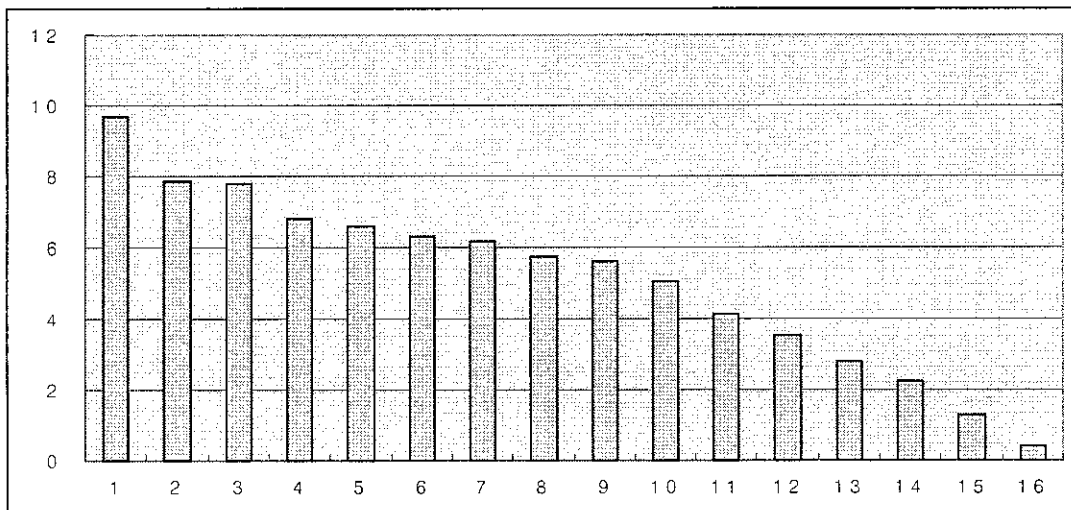
제1안에 따른 신청한도 증감율



□ 제 2 안 : $R^2 = 0.857$

$$\begin{aligned} \text{Log}[y] = & 4.26 - 1.11 \times (\text{재정력지수}) + 1.22 \times \text{Log}[\text{인구}] \\ & + 0.04 \times (\text{Log}[\text{면적}] + \text{Log}[\text{농경지면적}] + \text{Log}[\text{낙후면적}]) \\ & - 0.63 \times \text{Log}[\text{주민세소득세할}] + 5.84 \times (\text{노령인구비중}) \end{aligned}$$

제2안에 따른 신청한도 증감율



□ 제 1-A 안 : $R^2 = 0.867$

$$\begin{aligned} \text{Log}[y] = & 3.78 - 0.34 \times (\text{재정력지수}) + 1.14 \times \text{Log}[\text{인구}] \\ & + 0.27 \times \text{Log}[\text{면적}] - 0.73 \times \text{Log}[\text{주민세소득세할}] \\ & + 8.11 \times (\text{노령인구비중}) \end{aligned}$$

제1-A안에 따른 신청한도 증감율

